

##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2. 6. 21.] [기상청고시 제2022-6호, 2022. 6. 21., 일부개정]

항공기상청(정보기술과), 032-740-2850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기상법」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이 필요한 장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 6. 21.>

**제2조(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 장소)** 「기상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소 중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·운영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 6. 21.>

1. 인천국제공항
2. 김포국제공항
3. 제주국제공항
4. 무안국제공항
5. 양양국제공항
6. 울산공항
7. 여수공항

**제3조(재검토기한)** 기상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개정 2022. 6. 21.>

**부칙** <제2022-6호,2022.6.2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